

#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교육 및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김운삼  
강동대학교

##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Education and Welfare Policy in Korea

Un-Sam Kim  
GangD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이 유치원과 같은 교육현장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아의 다문화적 태도와 의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언행과 어린 시기 학교교육을 통해서 습득되기 때문에 가정과 유치원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다문화 교육은 단순히 교육현장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유아들의 가정내의 교육도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는 점무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다문화 교육에 대한 경험 여부에 따른 인식과 양육실제를 조사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에 관한 부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또한 부모를 위한 다문화 교육 및 복지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 다문화, 교육, 복지정책, 다문화 가정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educational sites such as kindergartens. Since the multicultural attitudes and consciousness of young children are unconsciously acquired through parents' words and school education, they emphasized the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at home and kindergarten. In other words,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not only be carried out in the field of education, but also in the homes of children. However, there are still few studies on multicultural education for parents.

In this regard,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arents on multicultural education by examining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with early childhood children and their actual experiences in multicultural education. To provide basic data.

**Key Words** :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Education, Welfare Polic

Received Jun 10 2019, Revised Jul 30 2019

Accepted Aug 05 2019

Corresponding Author: Un-Sam Kim  
(GangDong University)

Email: edupsy97@hanmail.net

ISSN: 2466-1139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지구촌 사회로 불리는 현대사회는 각기 다른 문화들을 융합하며 함께 살아간다는 점에서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는 다문화 사회가 됨에 따라 세계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문화와 가치, 태도를 형성하고 구성원간의 고유한 특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공존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김영옥, 2006).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민 개개인이 단일문화, 단일 언어, 단일가치를 공유하면서 동질체로서의 구성원을 중요한 특성으로 하는 ‘영토,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더 이상 유지, 존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조정남, 2001). 즉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닌 세계 속의 한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사는 유아들에게 다문화 교육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국제적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결혼의 증가 등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의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발표에 의하면 2017년 8월 현재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이 21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즘에는 길을 지나가다가도 주변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흔히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다문화 교육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와 자녀교육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21세기의 인간상을 제시하였는데, 특히나 “열린 마음”을 가진 개방성을 지닌 인간성을 강조하였다. 자기 자신과 생각이나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체성과 개방성은 세계화시대에 필요한 덕목이며, 그러한 덕목을 갖춘 인간 육성이야말로 다문화 교육의 근본 취지이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을 유아기 때부터 해야 하는 이유는 양옥승(1997)에 의하면 유아는 만 2,3세가 되면 자기 이외에 타인의 피부색, 성, 신체 구조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문화에 적응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만 4세가 되면 민족 집단과 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이 속한 문화와 타문화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데 많은 흥미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만

5, 6세가 되면 여러 나라의 문화와 하위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내면화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미혜(2004)는 유아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문화적 인식에 관한 교육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아기는 타인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 교육이 유치원과 같은 교육현장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광규(1998)는 유아의 다문화적 태도와 의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언행과 어린 시기 학교교육을 통해서 습득되기 때문에 가정과 유치원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다문화 교육은 단순히 교육현장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유아들의 가정내의 교육도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는 점무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다문화 교육에 대한 경험 여부에 따른 인식과 양육실제를 조사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에 관한 부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또한 부모를 위한 다문화 교육 및 복지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다문화 교육의 개념

### 2.1 다문화의 개념

‘다문화’는 multi-cultural, inter-cultural, cross-cultural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 다문화화를 알기 위해서 문화와 다문화의 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는 영국의 인류학자인 타일러[E. B. Tylor]에 의해 처음으로 1871년에 정의되었는데 그는 저서 《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에서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이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을 총체”라고 정의를 내렸다. 즉 타일러는 문화를 한 인간이 획득한 지식, 믿음, 예술, 도덕, 사랑, 규범 그리고 습관들을 포함한 복합체로 본 것이다. 특히 문화는 인간의 생활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습관과 신념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양식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한 사회에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사회 방식까지도 좌우하게 된다. 또한 문화는 세대를 통해 전승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온 무형과 유형의 삶의 방식이며 각각의 집단의 특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다.

1983년 Triandis는 “문화는 공간, 기구, 그리고 물건의 사용과 관련하여 객관성을 띠며 가치가 부여될 때에는 주관적이다.”라고 문화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1993년 뱅크스[Banks]는 “문화란 한 집단이 생존과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 즉 “한 집단이 그들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환경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술로서, 생존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Goodenough는 문화를 한 인간 집단의 구성원이 학습한 결과로 공유하고 있는 표준이라고 하면서 지각 개념화의 표준, 신념의 표준, 가치관이나 정조의 표준, 행동의 절차와 방법을 결정짓는 표준 등을 이야기 하였으며 생물학적인 유전과는 다른 것으로써 사람들이 학습해야만 하는 대상인 문화는 결과물인 지식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개인의 특별한 면 보다는 사회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협의된 지식이라고 하였다.

박영은(1995)은 문화는 각 민족의 사회, 인종과 집단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결과로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각 집단이나 사회 그리고 민족이나 인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의 형태들이 하나로 융화를 이룬 상태를 “다문화”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장영희(1997)는 문화란 한 민족의 생활양식의 총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통된 생활양식으로 인하여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는 귀속감을 갖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흐르는 물과 같아서 결코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서로 만나고 부딪치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아니며, 각기 나름대로의 환경이나 주위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변화·발전 하는 것이 문화라는 것이다.

문화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농경생활과 관련이 있는데, ‘다듬는다.’ 특히 ‘땀을

경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개화된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의 뜻을 갖게 된다. 그리고 문화의 정의는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는데 문화인류학적인 측면에서의 문화는 인간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이나 요인, 결과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문화는 생활의 모든 수단이면서 또한 모든 생활을 포함한 것으로 각 사람과 각 민족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각 집단이나 사회 그리고 민족이나 인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의 형태들이 하나로 이룬 상태를 ‘다문화’라고 볼 수 있다.

이수미(1999)는 문화는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각 집단의 사회, 그리고 인종에 따라 각기 고유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각기 독특하면서 분절된 문화의 형태들이 하나의 조합을 이룬 상태를 ‘다문화’라고 볼 수 있다.

채정란(1999)는 문화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간 생활과 밀접한 환경이며 인간의 드러난 행위 뿐만 아니라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내적으로 통합된 체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장영희(1997)는 다문화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단절된 문화들을 연결시키고 반영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특히 이 정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주문화(core culture)와 하위 문화(subculture)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사용되어 온 용어로 주문화와 하위문화가 갈등하는 가운데 이를 연결시켜주는 의미와 문화 간 사이에서 생기는 충돌을 극복하고자 만든 용어인 것이다.

## 2.2 다문화 교육의 배경과 개념

### 2.2.1 다문화 교육의 배경

‘다문화’는 ‘문화’라는 단어에서 유래한다. ‘문화’는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각 집단이나 사회, 그리고 민족이나 인종에 따라 각기 고유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각기 독특하면서 분절된 문화의 형태들이 하나의 조합을 이룬 상태를 ‘다문화’라고 볼 수 있고, 현대에 올수록 대부분 나라들은 다문화를 공유하는 사회가 된다고 할 수 있다(이수미, 1999, 개인용). 다문화 교육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접근방식이 조금씩 변화되어 왔다.

다문화 교육의 용어의 변천을 살펴보면 1920년대 후

반에는 미국 이민자들의 민족적인 배경과 문화적 공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라는 간문화 교육으로 사용되었고, 1960년대 초반에는 소수민족의 자아정체성을 높여려는 의도로 민족연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특별한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미국의 다양한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의미로 다민족 교육이 사용되었고, 1970년대에 이르러 진정한 다문화 교육이 사용되었다. 여기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1981년쯤에 사전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 용어가 사회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용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장영희, 1997; Gay, 1997; Montalo, 1982; Volk, 1998).

다문화 교육의 개념은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 맥을 유지해 왔다고 보여진다. 일찍이 Comenius(1592~1670)는 아동의 신분, 계층, 성의 구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만민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독일 철학자 Kant(1724~1807)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오로지 세계 시민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세계 시민적 체제를 주장한 바 있다. 유치원의 창시자 Frobel(1782~1852)의 교육과정도 계층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모든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간주되고 있다(김영옥, 1999; 이영석·이향재, 1998; 이원영, 1992).

다문화 교육은 1960년의 시민권 운동의 열기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후 약 10년 동안 아프리카계 미국인,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소외되거나 억압받았던 계층의 인권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교육의 개념이나 내용, 그리고 방법 등이 변화되었다. 1970년대에 비로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는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관심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 관심은 사회내의 많은 인종적, 그리고 하위문화간의 구성원에 의해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기회가 대립하는 문제와 집단상호간의 관계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의 교육체계에 있어서 교육적 평등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이념에서 시작되었다.

### 2.2.2 다문화 교육의 개념

다문화 교육은 반편견 교육, 다민족 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 이해 교육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우고 있다(교육부, 1999). 정선희(1997)는 다문화 교육이란 다양한 문화나 사고방식이 존재함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한 행동의 차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할 것을 강조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영석(2007)은 다문화 교육에 대해 문화적 다양성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서 지원하고 확장하려는 교육이라고 언급함과 동시에, 다양성이야말로 미래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을 의미한다고 했다.

다문화 교육은 각기 다른 인종과 성, 언어, 계층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문화의 세계에서 유아들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지식, 태도,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육이며, 이러한 교육적 기회는 모든 유아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김영옥(2006)은 여러 나라 문화와 인종 또는 비주류 문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만이 아니며 이와 같은 것을 기초로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집단이나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 하였다. 장영희(1997)는 다문화 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가치있는 자원으로 서로의 차이점을 뛰어넘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서 다문화 교육은 인간이 살아가며 주변 환경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태도를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서 다문화 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가치를 존중하여 의사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타인에 대해 개방적, 비판적, 반편견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다문화교육이란 모든 민족과 인종 집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세계화 교육이며, 세계화 시대에 지구공동체라는 필연성 속에서 각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를 조화롭게 유지시키며 공존하기 위한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자신의 전통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타인의 새로운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태도·기술을 기르게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 2.3 다문화가정의 유형

다문화가정 유형을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탈북자(새터민)가정으로 나눌 수 있다. 국제결

혼가정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나,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와 그리고 외국인근로자가정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 또는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아이와 부모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아이를 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가정의 구성

다문화 가정	그 자녀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외국인 근로자 가정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근로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근로자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
새터민 가정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후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아이
	탈북자 출신의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아이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의 여성과 또는 남성과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2.4 다문화 교육 및 복지제도의 필요성

### 2.4.1 인권의 측면

인권의 측면에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 개인에게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여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질서를 통하여 자유민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겨진다.

### 2.4.2 사회 전체의 측면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 보면, 다문화교육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와 같이 단일민족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경우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국적과 민족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고 언어와 문화에서도 이중성을 경험하게 되며, 또한 이들이 한국사회의 근대화 이후 늦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됨으로서 사회적 하층에 속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은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2.4.3 문화적 측면

한국 사회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들이 섞임으로서 더욱더 건강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문화적 측면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단일 민족과 단일 문화를 유지해온 한국 사회의 경우, 다양한 문화의 주입은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위한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이러한 측면은 앞의 양지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 3.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

### 3.1 중앙정부

다문화 가정, 특히 결혼 이주여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다문화가족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나타난 결과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우리의 다문화관련 정책이 수요자인 결혼 이주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지원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부서가 이들이 필요한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분산은 공무원들의 과욕으로 업무의 중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업무를 귀찮다는 이유로 서로 타부서로 떠넘기는 현상을 초래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비스 중복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심지어는 자부서의 사업의 영속성을 갖기 위해 결혼이주 가정을 대상으로 서로 자부서 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선물공세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다문화

가족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처이기주의가 존재하고 여성가족부의 정부 내 위치가 실제로 다른 부처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정책의 통합화와 효율화는 어려워 보인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을 정부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시민단체, 기업, 대학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오히려 중앙정부 중심의 과도한 개입은 민간의 역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셋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한국사회의 적응과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여성의 기여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과 취업의사가 높은만큼 이들의 능력을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 가정의 개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당수는 농촌에 정착해 살고 있다. 이들은 기대보다 낮은 주거환경, 생활양식에 도시의 이주여성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지원방식에도 반영해야 한다.

### 3.2 국적법과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국적의 취득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적법상 간이귀화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외국인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 시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결혼이민자들은 이 간이귀화 신청후 2년 정도의 국내거주 기간이 지나면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결혼이민자들은 매년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해야하며 이 때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한국인 남편이 불복종 등을 이유로 신원보증을 거부하여 결혼이민여성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 절차와 기간은 단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무부가 2009년 1월부터 시범 시행중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제도의 이해, 다문화사회의

이해 등 기본적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설명회에서 이 제도의 도입의 목적이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필기시험의 면제로 인해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대한 기본 소양이 부족한 결혼이민자들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사회 제도, 생활, 문화 등 국내정착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이민자 적응지원 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결혼이민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여 결혼이민자 가정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 제도가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동제도가 갖는 문제점은 먼저 강의 구성에 관한 부분이다. 물론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한국어 교육은 동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기존 ‘다문화가족센타’를 중심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지 결혼이주여성들이 실제로 참여가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농촌에서 임신, 육아, 시부모 봉양, 가사노동 등에 시달리는 결혼이민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교육내용이 한글 습득과 한국사회를 이해시키는 강의 위주여서 한국인으로 동화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인 다양성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과정에서 무시되기 쉽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될 것을 강요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 3.3 결혼중개업소의 탈·불법 결혼 중개

결혼 이주여성들의 문제는 결혼 초기단계부터의 잘못된 만남이 시작이며 그들의 잘못된 만남의 시작은 결혼중개업소에게 있다. 따라서 탈·불법 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동안 국제결혼중개업소의 탈·불법인 중개행위가 결혼이주여성 문제의 시작임을 알고 있는 정부에서도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중개업소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과 결혼을 금지시킨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아직도 결혼 중개업소의 탈·불법적인 결혼 중개행위는 성행하고 있는 점이다.

대부분의 동남아 결혼 이주여성들은 경제성장과 한류 열풍으로 인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지도와 잘못 제공된 예비 신랑의 신상정보만을 가지고 현실보다는 꿈에 부풀어 입국하였으나 국내 도착 후에 알게 된 잘못된 결혼 정보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시작부터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 과정에서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데렐라의 꿈을 품고 많은 돈을 지불한 여성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돈을 내고 여성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남성에게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결혼이라 해도 혼인 자체가 자유의지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인 근거는 없다.

## 4. 다문화 교육 및 복지지원 정책의 발전방향

### 4.1 다문화가족정책의 통합 및 조정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가족 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각 부처별로 업무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중복 정책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문제, 상호 협조체계의 부재로 인한 정책 수혜자들의 혼란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시급히 다문화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물론 여성가족부가 이러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부처 내 위상으로 볼 때 과연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이 최근 우리사회의 주요한 해결 과제를 인식하고 실제적으로 분산된 다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실 소관 업무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 4.2 탈·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국제결혼 중개업소의 탈·불법 중개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제결혼 중개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감독을 강화하였다. 현행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벌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국제결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외국 현지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개정 후에도 탈·불법적인 결혼 중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부의 법률 개정노력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통상적으로 국내결혼에서도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정부분 과장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현실적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소의 허위과장 행위를 100%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표준약관 등을 제정하여 기본적으로 결혼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할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개비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상환에 관한 규정도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높은 수수료가 국제결혼 업자들에게 허위, 과장을 통하여서라도 결혼을 성사시키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몸값으로 작용할 소지가 여전히 있고,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소개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는 여성들이 국내 입주 후에 허위정보에 의한 결혼의 지속 강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 입국 후에 허위 과장에 의한 잘못된 결혼이라는 사실을 안다하여도 우리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인 우리 국민도 힘든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제행위임을 감안할 때 국제결혼중개업소의 탈·불법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를 막을 수 있는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4.3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현행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 시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결혼이민자들은 이 간이귀화 신청 후 2년 정도의 국내거주 기간이 지나면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결혼이민자들은 매년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해야하며 이 때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필요하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2년간 결혼생활을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신원보증 해지로 인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고 외국인 전용쉼터 등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혼이민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여부 확인 등을 통해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를 잘알지 못한 결혼 이주여성이 혼인파탄 귀책사유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물론 이는 국내 입국목적이 결혼에 있지 않고 국제결혼을 단지 국내 입국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 일부 결혼 이주여성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결혼 초기부터 이혼을 전제로 남편의 혼인파탄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 것도 아니라

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파탄사유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대한 입증책임은 완화시켜 혼인파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책임소계가 규명될 때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가 허용이 되어야한다.

### 4.4 정책의 접근성 제고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나 그 가족들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부재에도 있지만 현행 정부정책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정부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많은 정부정책을 쏟아내기 보다는 기존 정책의 실효성,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의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에 비하여 현저하게 나이가 많거나 학력의 차이가 있는 남성들의 경우 여성의 외출을 두려워하거나 타인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여성들이 정부정책으로부터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이들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4.5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결혼 이주민 2세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결혼 이주자 문제가 우리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출산률 저하로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감소와 동시에 결혼 이주여성 자녀들의 진학으로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의 사회화 교육은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교육과 학기기술부를 중심으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하고 교사 및 또래 집단 등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취학 안내 등 가정 내에서 학습지도가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학교생활 안내 리플렛」을 다언어로 제작하고 배포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인 프로그램만으로는 이들이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부족하다. 특히 자녀들의 생활이 학교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 4.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직업상담 및 고용서비스 지원, 건강증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직장을 갖기가 어려우며 직장을 갖는다 해도 급여수준이 낮은 식당 등 서비스업종에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역시 내국인 여성에 비하여 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결혼 이주여성이나 그 자녀를 일정보을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고학력 여성들은 출신국과의 거래관계를 갖는 기업의 취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대부분이 다문화 교육 및 복지제도가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 및 복지에 관한 바람직한 생각과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양육실체는 충분치 않았는데, 이는 학부모들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부족으로 실제적인 양육에서 잘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다문화를 어떻게 접근시켜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람직한 양육실체가 어렵다고 하므로 아동에게 좀 더 유익한 활동을 위하여 학부모보다 더 많이 인식하고,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 교육을 위한 실제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어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생각들을 자녀의 양육과 잘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역할만큼이나 자녀의 가치관이나 문화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재, 교구나 TV 프로그램

의 내용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양육실제 등에 관해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과의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님들과의 면담을 통해 다문화 교육의 실태나 문제점 등을 더욱 깊이 파악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여성이나 남성, 자녀들이 한국인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그들을 편견과 차별로 대하고 있기에 다문화가정 내 한국인 가족과 우리 모두를 위한 다문화 연계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다문화 교육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부모의 학력 및 직업으로만 다문화 교육에 관한 인식과의 관계만을 규명하였는데, 여기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다문화 교육에 관한 경험여부,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을 변인으로 두고 연구한다면 좀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인종이나 문화와의 접촉경험 여부로 인해 다문화 교육에 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은 다문화 교육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김영옥(2008),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태도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143-164.
- [2] 박영은(1995), “세계화의 지형변화와 문화적 갈등”, 정신문화연구 60(1995.10), 97-118.
- [3] 손정미·구경선(2008), “다문화 교육에 대한 보육 교사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보육정책연구, 제4권 2호 (2008년 12월), 39-62.
- [4] 양옥승(1997), “유아교육과정 연구의 재개념화, 3: 다문화주의의 적용”, 덕성여자대학교교육연구소 교

- 육연구. 5(1997.12), 49-66.
- [5] 윤경선·김영옥(2006), “유아 교수·학습 유형이 친사회적 행동, 또래 인기도, 사회인지 및 언어표현 능력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제26권 제4호, 151-174.
- [6] 이미혜(2004), “다문화 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아버지의 인식 및 교육 실제 비교”,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이수미(1999), “미술을 통한 유아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모형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이영석(2007), “다문화시대 현장유아교육의 나아갈 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4권 제1호 (2007년 2월), 55-75.
- [9] 장영희(1997), “유아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개념 및 교수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 35(1997.2), 295-314.
- [10] 정선희(1997), “다문화 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정연희(2008), “우리나라 다문화 이해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조정남(2001), “일본의 단일민족 정책”, 민족연구. 제7호, 2001. 9, 44-74.
- [13] 채정란(1999),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와 다른나라 생활주제 분석”,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김경자(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 전주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김성화(2008),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김현미(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경제화 사회 통권 제70호, 한국산업사회학회.
- [17] 문순영(200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통권 제72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8] 민경자(2003),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지원 방안 연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19] 박정희(2008), “한국사회 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현황”, 청주대학교 국제협력연구원.

김 운 삼(Kim, Un-Sam)



- 현재 : 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02년 2월~2019. 현재 : 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심리학, 다문화, 복지
- E-Mail : edupsy97@hanmail.net